

자부담금 납부방식 추가 및 착수금 신청 안내

- '22년도 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 교체 분야 -

- ❖ (이동식기계 교체 분야 적용) 기준금리 인상, 대출규제 등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라 자부담금 납부방식을 기존 금융방식에서 직접보조방식을 추가하여 보조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자부담금 납부방식 변경 신청

- (신청 대상) '22년도 보조결정 투자기업 중 금융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투자기업
- (보조금 지급방식) 금융보조(할부·리스) → 일시금 직접보조
※ (직접보조) 장비 도입 → 투자완료 확인 → 사업 또는 사업주 계좌로 보조금 지급
(금융보조) 장비 도입 → 투자완료 확인 → 지급요청(금융사) → 금융사로 보조금 지급

보조금 지급방식	기존	확대
	선수금(할부) 또는 보증금(리스) 형태 → 금융사로 지급	일시금 형태 → 사업 또는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

- (변경 가능 시기) 보조대상 결정통보 이후부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
※ 투자완료 확인 요청 이후 사업계획 변경신청 불가
- (변경 신청 방법) 홈페이지(anto.kosha.or.kr) > 사업관리 > 사업변경(협약) > 변경신청
- (투자완료 기한) 투자계획 변경을 하더라도, 투자완료 기한은 기존과 동일
- (보조금 지급시기) 투자완료 확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
※ 장비 출고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투자완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

착수금 신청(일시금 직접보조)

- (지급 범위) 보조결정금액의 70% 이내
- (신청 가능 시기) 보조대상 결정통보 이후부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
- (착수금 신청 방법) 홈페이지(anto.kosha.or.kr) > 사업관리 > 착수금 신청

지급보증보험 가입	착수금 신청	착수금 지급
가입내용 [피보험자] 안전보건공단 본부 - 사업자등록번호: 122-82-04898 [가입금액] 착수금 신청금액 이상 - 보조결정금액의 70%~100% - 결정통보서 등 서류 필요 [가입기간] 가입일 ~ 2026.12.31. - (예) 2022.10.31. ~ 2026.12.31. [보험가입] SGI서울보증(전국) - 보증내용: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	제출 서류 1. 지급보증보험증권 - 가입자, 가입금액 등 확인 2. 입금통장 사본 - 사업 또는 사업주 계좌만 가능 - 공급업체 계좌 불가	착수금 지급 공단→투자기업 ※ 보조금 잔액(착수금 제외)은 투자완료 확인 이후 지급 가능

- (지급보증보험) 착수금 신청 시 보조금액의 100% 범위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
- 다만, 착수금 신청 시 보조금액의 70% 범위로 제출하고, 장비 도입 후 투자 완료 확인 요청 시 보조금액의 100% 범위로 재가입·제출 가능
※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(착수금 포함) 지급 불가